

의안번호	제 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7월 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7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상위법인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유효기간(2년) 삭제(안 제6조)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4항에 의한 지정 취소 조치가 없을 경우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지침(문체부)에 명시
-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조정(안 제13조, 제21조)
 - 문화예술, 건축물미술작품심의 위원회 성별 균형 고려 위촉, 연임규정(무제한 → 두 차례) 조정
-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 출품제한 규정 삭제(안 제26조제2항)
 - 심의위원 미술작품 출품제한 규정으로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창작활동 범위가 축소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도지사가 위촉한다” 를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지역적”을 “지역과 성별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지정유효기간 등)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유효기간 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< 삭제 ></p>
<p>제13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 ~②(생략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중에서 <u>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④, <u>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1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(생략)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, 건축관련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되 <u>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1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지역과 성별의</u></p> <p>③, <u>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6조(위원의 의무) ①(생략) ② 심의위원회는 재직기간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.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26조(위원의 의무) ①(현행과 같음) < 삭제 ></p> <p>②~③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7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육성)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3. 그 밖에 전시·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25]

□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

제4조의3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취소)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·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
2.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·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전시·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

·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11.25.]